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예정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연장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속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예정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연장

개정안은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에 이 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⑥ (생략) <신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동중지 기간은 최대 9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¹⁾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①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되고, ②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²⁾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2024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렘피스킨병(LSD)으로 인하여 22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하여 11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으로 인하여 22차례³⁾ 발령되었음.

그런데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이 법상의 제도 외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로 인하여 「가축분뇨법」상의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의 이동이 제한된 기간에 두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검사에 대한 수검의무와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가축의 소유자가 둘 중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에 이 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검사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

3) '23~'24시즌 3차례, '24~'25시즌 14차례

※ 겨울철 집중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두 해에 걸쳐있는 겨울의 특성상, 연 단위가 아닌 시즌(계절)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4) 가령,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검사가 해당 될 수 있음. 부숙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에서 부숙중인 가축분뇨 퇴비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미리 나눠주는 시료 봉투에 담아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 의뢰함

< 검사절차 >

축산농업인 가축분뇨 시료채취	⇒	농업인→센터 검사의뢰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축종별 부숙도 검사	⇒	센터→농업인 검사성적서 통보(우편, 대면 등)
-----------------------	---	--------------------------	---	-------------------------	---	---------------------------------

「가축분뇨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④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별표6]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이하 생략>

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⁵⁾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검사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현행법상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설령 1회 연장하더라도 최대 96시간까지만 이루어지는 점,⁶⁾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할 수 있는 점⁷⁾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 등의 검사기간의 연장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임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19조의2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 등이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상 검사의 기간에 관한 예외를 이 법에 규정할지 환경부 소관인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이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이동할 수 있는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4

참 고

2024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제출자료)

1. 렘피스킨병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내역(총 22회)

순번	지역	축종	발령일시(시간)
1	경기 6(안성,화성,평택,용인,오산,이천), 충북 2(음성,진천), 충남 3(당진,아산,천안)	소	'24.08.12. 20:00 (48H)
2	경기 5(이천,안성,용인,여주,광주), 충북 2(음성,충주)	소	'24.08.31. 20:00 (24H)
3	강원 5(양구,고성,인제,화천,춘천)	소	'24.09.12. 00:30(48H)
4	경기 4(여주,이천,광주,양평), 강원 1(원주), 충북 2(충주,음성)	소	'24.09.18. 19:30 (24H)
5	충북 4(충주,음성,괴산,제천), 경기 2(여주,이천), 강원 1(원주), 경북 1(문경)	소	'24.09.19. 23:00 (24H)
6	경기 5(평택,화성,오산,용인,안성), 충남 2(천안,아산)	소	'24.10.03. 10:00 (24H)
7	강원 6(양양,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소	'24.10.03. 20:00 (24H)
8	강원 4(고성,속초,인제,양구)	소	'24.10.04. 24:00 (24H)
9	강원 6(양양,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소	'24.10.10. 23:00 (24H)
10	경북 6(상주,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충북 4(영동,옥천,보은,괴산)	소	'24.10.19. 21:00 (48H)
11	강원 7(인제,양구,춘천,홍천,양양,속초,고성)	소	'24.10.25. 07:00 (24H)
12	충남 4(당진,아산,예산,서산)	소	'24.10.25. 07:00 (48H)
13	강원 3(원주,횡성,영월), 충북 2(제천,충주), 경기 2(여주,양평)	소	'24.10.25. 22:00 (24H)
14	경북 3(문경,예천,상주), 충북 4(괴산,충주,제천,단양)	소	'24.10.25. 24:00 (24H)
15	충북 4(충주,제천,괴산,음성), 경기 1(여주), 강원 1(원주), 경북 1(문경)	소	'24.10.28. 19:00 (24H)
16	강원 3(원주,횡성,영월), 경기 2(여주,양평), 충북 2(제천,충주)	소	'24.10.29. 09:00 (24H)
17	경기 4(안성,평택,용인,이천), 충북 2(음성,진천), 충남 1(천안)	소	'24.10.29. 20:00 (24H)
18	대구 2(군위,동구), 경북 5(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	소	'24.11.13. 22:00 (36H)
19	충남 5(아산,천안,공주,예산,당진), 경기 1(평택)	소	'24.11.14. 20:00 (24H)
20	전남 7(영암,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	소	'24.11.17. 22:00 (48H)
21	대구 1(동구)	소	'24.11.25. 18:00 (24H)
22	충북 1(보은)	소	'24.12.03. 20:00 (24H)

2.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내역(총 11회)

순번	지역	축종	발령일시(시간)
1	경북, 대구	돼지	‘24.01.16. 20:00 (48H)
2	경기 7(파주,김포,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 강원 1(철원)	돼지	‘24.01.18. 18:30 (48H)
3	강원 2(철원,화천), 경기 7(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 1(강화)	돼지	‘24.05.21. 20:00 (48H)
4	경북, 대구	돼지	‘24.06.15. 22:00 (48H)
5	경북 7(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청송,의성)	돼지	‘24.07.02. 20:00 (24H)
6	경북 6(예천,문경,상주,의성,안동,영주), 충북 1(단양)	돼지	‘24.07.07. 06:00 (24H)
7	경북 6(영천,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 대구 2(동구,군위)	돼지	‘24.08.12. 23:00 (24H)
8	경기 7(김포,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1(철원), 인천	돼지	‘24.08.31. 00:30 (48H)
9	강원 4(화천,철원,양구,춘천), 경기 2(가평,포천)	돼지	‘24.10.13. 20:00 (48H)
10	강원 7(홍천,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2(양평,가평)	돼지	‘24.11.03. 24:00 (24H)
11	경기 7(양주,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	돼지	‘24.12.16. 18:00 (48H)

3. 고병원성 AI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내역(총 22회)

순번	지역	축종(계열사)	발령일시(시간)
1	전남	오리(다슬)	'24.01.04.(목) 10:00 (24H)
2	충남,경기,세종	산란계	'24.01.06.(토) 13:00 (24H)
3	전국	산란계	'24.01.10.(수) 10:00 (24H)
4	경남	오리	'24.05.23.(목) 23:00 (24H)
5	전국	가금	'24.10.30.(수) 00:00 (24H)
6	전국	오리	'24.11.07.(수) 23:00 (24H)
7	전국	닭	'24.11.18.(월) 19:00 (24H)
8	전남	닭, 오리	'24.11.24.(일) 22:00 (24H)
9	충남	오리(주원산)	'24.11.26.(화) 18:00 (24H)
10	전국	가금	'24.12.3.(화) 01:00 (36H)
11	전북	오리(참프레)	'24.12.5.(목) 20:00 (24H)
12	경북	닭	'24.12.11.(수) 23:00 (24H)
13	전북	오리(목우촌)	'24.12.13.(금) 10:00 (24H)
14	충남	닭	'24.12.16.(월) 04:00 (24H)
15	전북	오리(다슬)	'24.12.18.(수) 09:00 (24H)
16	경기, 인천	닭	'24.12.20.(금) 15:00 (24H)
17	경기 7개시	닭, 오리	'24.12.21.(토) 20:00 (24H)
18	전국	산란계	'24.12.23.(월) 00:00 (36H)
19	경기,충북,강원 7개시군	닭	'24.12.25.(수) 23:00 (24H)
20	전북	오리(제이디팜)	'24.12.27.(금) 11:00 (24H)
21	충북	산란계	'24.12.28.(토) 00:00 (24H)
22	경기,충북 8개시군	닭	'24.12.30.(월) 22:00 (24H)